

특 허 심 판 원
제 10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7당1611

사 건 표 시 특허 제1593009호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의 무효

청 구 인 박홍복
경기 군포시 금당로 78, B동 302호(당동, 유한빌라)
김의탁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88길 16, 203호(독산동)

피 청 구 인 이병희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18-6(과천동)
최희욱
서울 관악구 관악로11길 71-11(봉천동)
위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변리사 류창희, 구창모
서울 강남구 논현로94길 13, 예일패트빌딩 (역삼동)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위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이우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5길20 역삼현대벤처텔 1905호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 결 일 2018. 6. 14.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특허등록 제10-1593009호에 대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특허 제1593009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절차의 경위

- ① 발명의 명칭 :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
-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15. 4. 30./제10-2015-61683호
-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6. 2. 2./특허 제1593009호
- ④ 이 사건 외 무효심결(2016당541) : 2016. 10. 31.
- ⑤ 이 사건 외 무효심결(2016당541) 확정(특허법원 2016허8971) : 2017. 2. 17.
- ⑥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 : 2017. 5. 24.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세면대(10)와; 세면대(10)의 세면수를 필터링하여 저장하는 육면체 통상의 저수조(20)와; 상기 저수조(20)의 내부 우측 상부에 설치되어 세면수를 필터링하는

필터수단(50)과; 상기 저수조(20)의 내부 전면 상부에 상하로 설치되는 제 1, 2 수위 감지센서(60, 60')와; 상기 저수조(20)에 저장된 물을 물탱크(30)로 공급하기 위해 상기 저수조(20)의 내부 바닥면 좌측 중앙부에 설치되는 수중펌프(70)와; 상기 저수조(20)의 뚜껑(21) 코너부에 설치되어 상기 저수조(20)에 세정액을 투입하는 세정액 투입수단(80) 및; 표시판넬(90)을 구비하는 제어반(90')으로 구성되어 세면대(10)의 세면수를 저수조(20)에 저장하였다가 물탱크(30)로 공급하여 양변기(40)에 재사용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필터수단(50)은 윗면이 개방된 사각 통상의 필터 하우징(51)과; 상기 필터 하우징(51)의 내부 후방에 설치되는 칸막이(52)와; 상기 칸막이(52)와 필터 하우징(51)의 전면 사이에 설치되는 길이 방향을 따라 절개 구멍이 형성된 원통상 필터 지지구(53); 상기 세면대(10)의 배수관(12)이 연결되는 연결구(54)와; 상기 연결구 전면에 형성된 필터 삽입돌기(55)와; 상기 저수조(20)의 전면 우측 상부에 형성된 필터삽입구(23)에 나사 체결되는 필터 체결링(56); 상기 필터 지지구(53) 내부에 장착되는 원통상 필터(57) 및; 상기 필터 체결링(56)에 나사 결합되는 필터 마감(58)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주요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청구항 2, 3, 6.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 하우징(51)은 상기 저수조(20)의 우측 내면에 밀착되어 설치되고, 필터 하우징(51)의 우측면과 바닥면 코너부에 길이 방향을 따라 관통구멍(51a)이 형성되어 상기 원통상 필터(57)를 통해 필터링 된 물이 관통구멍(51a)을 통해 저수조(20)의 우측 내면을 따라 흘러 저수조(20) 내에 저장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칸막이(52)는 그 높이를 필터 하우징(51)의 높이 보다 낮게 하여 칸막이(52) 위로 넘치는 물이 배수관(59)을 통해 배수되어 저수조(20) 내에 저장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

다.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2011. 8. 16. 공고된 국내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54984호, 갑 제2호증)은 ‘양변기용 세면수 재활용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2015. 5. 29. 공개된 국내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5-2057호, 갑 제3호증)는 ‘세면수 재활용 변기 세척밸브 절수장치’에 관한 것이다.

(3) 비교대상발명 3(2001. 7. 19. 공고된 국내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229543호)은 ‘절수형 세면기’에 관한 것이다.

(4) 비교대상발명 4(2000. 12. 15. 공고된 국내등록특허공보 제10-274537호)는 ‘허드렛물을 이용하는 수세식변기의 세척수 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5) 비교대상발명 5(2006. 4. 11. 공고된 국내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13494호)는 ‘수세식 변기에 활용되는 세면대물 재활용 장치’에 관한 것이다.

(6) 비교대상발명 6(2010. 9. 1. 공개된 국내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0-8651호)은 ‘복합 위생 변기’에 관한 것이다.

(7) 비교대상발명 7(2000. 8. 16. 공고된 국내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91223호)은 ‘절수식 양변기’에 관한 것이다.

(8) 비교대상발명 8(2004. 5. 4. 공고된 국내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49313호)은 ‘오수 재활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8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선출원인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8과 동일하여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선출원인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청구인의 특허발명인 비교대상발명 2 및 갑 제4호증을 모인하여 출원한 무권리자의 출원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8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박홍복 등의 등록실용신안 간에 소극적 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사실이 없었고 또 그 결과 사법적인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주장 및 비교대상발명 2와 갑 제4호증(비교대상발명 2의 출원전 설계도면)을 모인하여 출원한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주장이라 하겠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의 나머지 주

장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갑 제5호증(특허권 양수도 계약서), 갑 제6호증(진정서) 및 갑 제9호증(주식회사 지온위터의 친환경 재활용 절수기 카다로그)은 전혀 알지 못하므로 부지이며, 갑 제4호증(비교대상발명 2의 출원전 설계도면) 및 갑 제7호증(특허결정서)은 성립은 인정하지만 입증취지는 전부 부인한다.

3. 이해관계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인 1(박홍복)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제10-1593009호의 권리자인 이병희, 최희욱의 '2017고단6278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2018. 5. 28. 의견서에 첨부된 '증인소환장' 참조), 청구인 2(김의탁)는 비교대상발명 2(2015. 5. 29. 공개된 국내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5-2057호, 출원번호 제20-2015-2681호, 갑 제3호증)를 청구인 1(박홍복)로부터 권리이전 받은 사실이 있으며(2017. 3. 16. 출원인변경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참조), 위 이전받은 권리의 실용신안권자(제20-484308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은 자 또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부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는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는 있는 바, 이는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명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가 누락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과제의 해결 수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어느 부분이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과제의 해결수단,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결과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발명 즉, 동일성에 대한 판단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 판단과는 다르게 선원과 후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비교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기 기준을 바탕으로 양 발명의 청구범위를 서로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8에 의하여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8의 어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에 대하여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가장 유사한 비교대상발명 2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이하 '선원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위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과 선원 제1항 발명을 대비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동일성 판단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세면대(10), 저수조(20), 필터수단(50), 제1, 2 수위 감지센서(60, 60'), 수중펌프(70), 세정액 투입수단(80), 제어반(90)'으로 구성되어 세면대(10)의 세면수를 저수조(20)에 저장하였다가 물탱크(30)로 공급하여 양변기(40)에

재사용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에 있어서, 상기 필터수단(50)은 필터 하우징(51), 칸막이(52), 원통상 필터 지지구(53), 연결구(54), 필터 삼입돌기(55), 필터 체결링(56), 원통상 필터(57), 필터 마개(58)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이다.

이와 대비되는 선원 제1항 발명은 물 저장탱크(10)의 집수부 내에 설치되는 필터부(14), 필터를 교체하는 앞면 필터덮개(14-1), 소독액을 설치할 수 있게 필터와 같이 설치한 세정장치부(60), 펌프(16), 역류방지 체크밸브(17), 연결 배관부(18), 변기 세척밸브 저장탱크부(30), 밸브부(34), 작동부(35), 연결부 패킹(37), 연결대(36)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면수 재활용 변기 세척밸브 절수장치에 관한 것이다('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도 2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를 이루는 구성 뿐만 아니라 필터수단(50)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구성을 더 기재하고 있는 것인데 반해, 선원 제1항 발명은 세면수 재활용 변기 세척밸브 절수장치의 구성만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세면수 재활용 변기 세척밸브 절수장치)에 일부 동일한 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필터수단의 세부구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선원 제1항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 선원 제1항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당연히 선원 제1항 발명과 상이한 것이다.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 내지 비교대상발명 8에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필터수단(50)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세부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 내지 비교대상발명 8과 상이한 것이다.

(3) 판단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8과 상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 위배 여부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특허법 제29조 제3항 위배 여부

(가) 기술분야 및 목적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세면수 재활용 변기 세척밸브 절수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세면수를 재이용(재활용)하여 양변기(변기)에 공급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목적은 세면대에서 발생하는 세면수를 저장하였다가 재이용함으로써 수세식 양변기 사용에 따른 생활용수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수질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오폐수의 배출량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식별번호 [0017] 참조), 비교대상발명 2의 목적은 절수기인 물 저장탱크를 세면대 밑 빈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세면대에서 발생하는 세면수를 전부 모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07] 참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의 목적은 세면대에서 발생하는 세면수를 저장하였다가 재이용함으로써 수세식 양변기 사용에 따른 생활용수의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1) 구성 1

구성 1은 '세면대(10), 저수조(20), 필터수단(50), 제1, 2 수위 감지센서(60, 60'), 수중펌프(70), 세정액 투입수단(80), 제어반(90)'으로 구성되어 세면대(10)의 세면수를 저수조(20)에 저장하였다가 물탱크(30)로 공급하여 양변기(40)에 재사용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이다.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2는 세면대, 물 저장탱크(10), 필터부(14), 센서(51), 펌프부(16), 소독장치부(60), 계기판(50)으로 이루어진 세면수 재활용 변기 세척밸브 절수장치에 대응되나(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16], 도 2 내지 4 참조), 비교대상발명 2에는 제어반(90')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구성 1의 제어반(90')은 저수조에 설치된 제 1, 2 수위감지센서(60, 60')의 수위 감지에 따라 펌프를 제어하여 저수조에 재이용 세면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도 변기밸브 저장탱크(30)에 설치된 수위센서(51)의 수위 감지에 따라 펌프부(16)를 작동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2에도 구성 1의 제어반이 구비되어 있다고 봄이 자명하므로, 구성 1과 비교대상발명 2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2) 구성 2

구성 2는 '상기 필터수단(50)은 필터 하우징(51), 칸막이(52), 원통상 필터 지지구(53), 연결구(54), 필터 삽입돌기(55), 필터 체결링(56), 원통상 필터(57), 필터 마개(58)'로 구성된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물 저장탱크(10) 내의 일측에는 세면수에 있는 부유물을 걸러 물 저장탱크(10) 내에 공급할 수 있게 필터(14)를 설치하고, 필터 상부 쪽에는 소독장치부(60)를 설치하여 물을 세정하며, 필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물 저장탱크(10) 앞쪽면에 필터교환 덮개(14-1)를 구비하는 구성에 대응된다(갑 제3호증, 식별번호 [0016], 도 2 내지 4 참조).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2에는 구성 2의 칸막이(52), 원통상 필터 지지구(53), 연결구(54), 필터 삼입돌기(55), 필터 체결링(56)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차이가 있고, 구성 2의 필터수단(50)은 필터 하우징(51)을 구비함으로써 필터링된 물이 관통구멍(51a)를 통해 저수조(20)의 우측 내면을 따라 흘러 저수조(20) 내에 저장되게 하여 배수 소음이 없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으며, 칸막이(52)를 구비함으로써 칸막이(52) 위로 넘치는 물이 배수관(59)을 통해 배수되어 저수조(20) 내에 저장되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2의 필터는 단순히 물 저장탱크(10) 내의 세면수에 있는 부유물을 걸러내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2의 필터는 구성 2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 2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3) 대비결과

이상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2)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의 특허법 제29조 제3항 위배 여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당연히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모인출원)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모인출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인 비교대상발명 2가 동일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또는 그 승계인)이 정당한 출원인이 아니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4. 나. (2) '동일성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서로 다른 발명이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인인지 여부 및 비교대상발명 2 및 갑 제4호증(비교대상발명 2의 출원전 설계도면) 모인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인출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비교대상발명 2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5. 4. 30. 출원(출원번호 제10-2015-61683호)되었고, 비교대상발명 2는 2015. 5. 29. 공개(공개번호 제20-2015-2057호)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보다 비교대상발명 2의 공개일이 늦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하는 간행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교대상발명 2를 제외한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 내지 비교대상발명 8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가) 기술분야 및 목적대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양변기용 세면수 재활용 장치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 내지 비교대상발명 8은 모두 세면대의 세면수를 재이용하여 변기에 사용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 내지 비교대상발명 8은 모두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재활용) 장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목적은 세면대에서 발생하는 세면수를 저장하였다가 재이용함으로써 수세식 양변기 사용에 따른 생활용수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수질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오폐수의 배출량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식별번호 [0017] 참조), 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은 세면대에서 발생된 물을 물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며(갑 제2호증, 식별번호 [0010] 참조), 비교대상발명 3 내지 비교대상발명 8의 목적도 세면대에서 발생하는 세면수를 저장하였다가 변기에 재이용함으로써 생활용수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 내지 비교대상발명 8은 모두 세면대에서 발생하는 세면수를 저장하였다가 재이용함으로써 수세식 양변기 사용에 따른 생활용수의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 내지 비교대상발명 8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1) 구성 1

구성 1은 '세면대(10), 저수조(20), 필터수단(50), 제1, 2 수위 감지센서(60, 60'), 수중펌프(70), 세정액 투입수단(80), 제어반(90)'으로 구성되어 세면대(10)의 세면수를 저수조(20)에 저장하였다가 물탱크(30)로 공급하여 양변기(40)에 재사용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이다.

이와 대비되는 비교대상발명 1은 세면대(20), 물탱크(11), 필터부(24), 센서(40), 공급모터(41), 제어부(100)로 구성되어 세면대(20)의 세면수를 물탱크(11)에 저장하였다가 양변기 물탱크(50)로 공급하여 양변기에 재활용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활용 장치에 대응되나(식별번호 [0019] 내지 [0030], 도 1, 2 참조),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 1의 세정액 투입수단(80)이 나타나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위 차이나는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3 및 비교대상발명 6과 대비하여 보면, 비교대상발명 3에는 세정통(12)에 소포제를 넣어 사용수를 깨끗한 물로 세정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고안의 구성 및 작용' 참조) 비교대상발명 6에는 고체로 된 변기 세정제를 넣는 망으로 된 케이스가 나타나 있으므로(식별번호 [0007] 참조),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3 또는 비교대상발명 6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 1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비교대상발명 1, 6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2) 구성 2

구성 2는 '상기 필터수단(50)은 필터 하우징(51), 칸막이(52), 원통상 필터 지지구(53), 연결구(54), 필터 삽입돌기(55), 필터 체결링(56), 원통상 필터(57), 필터 마개

(58)로 구성된 것이고,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입수관(23) 끝단에 필터부(24)를 설치하여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구성에 대응되나(식별번호 [0035], 도 2, 3 참조), 비교대상발명 3에는 구성 2의 필터수단(50)의 세부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 2의 칸막이(52), 원통상 필터 지지구(53), 연결구(54), 필터 삽입돌기(55), 필터 체결링(56)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차이가 있고, 구성 2의 필터수단(50)은 필터 하우스(51)를 구비함으로써 필터링된 물이 관통구멍(51a)를 통해 저수조(20)의 우측 내면을 따라 흘러 저수조(20) 내에 저장되므로 배수 소음이 없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으며, 칸막이(52)를 구비함으로써 칸막이(52) 위로 넘치는 물이 배수관(59)을 통해 배수되어 저수조(20) 내에 저장되도록 하는 작용효과가 있는데 반해, 비교대상발명 1의 필터부(24)는 이물질을 걸러내어 이물질이 물탱크(11) 내부로 인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필터부(24)는 구성 2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는 스트레이너 또는 걸름망(12)(‘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및 도 1, 2 참조), 비교대상발명 5의 1차 필터 및 2차 필터(식별번호 [0035] 내지 [0039] 참조), 비교대상발명 6의 여과기(120)(식별번호 [0013] 참조) 비교대상발명 8의 필터층(11)과 찌꺼기 망(34)(‘고안의 상세한 설명’ 참조)은 각각 그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성 2의 필터수단(50)의 세부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3, 7에도 필터에 대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성 2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 내지 비교대상발명 8로부터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 내지 8과 상이하고, 또

한 통상의 기술자가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다) 대비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 내지 8 과 상이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한정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도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항,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당 심판부의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외 무효심판사건인 2016당541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2016. 10. 31.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17. 2. 17. 확정(특허법원 2016허8971)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효심판과 위 확정심결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3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동일사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무효심판의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8은 모두 이 사건 외 확정심결에서 사용하였던 비교대상발명들이므로 동일증거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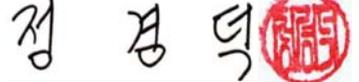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아.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3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내지 제29조 제3항 및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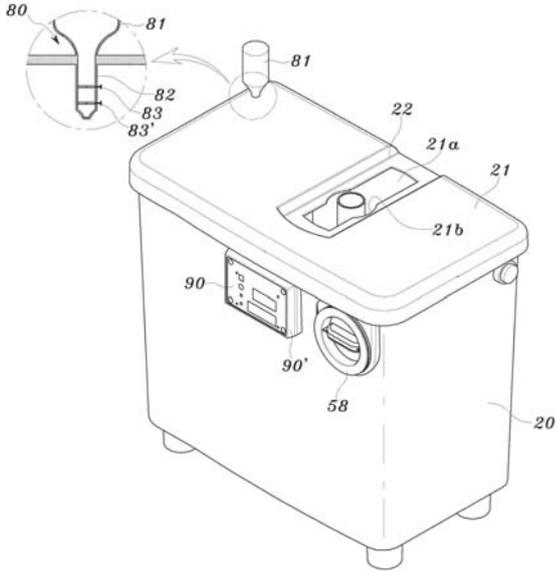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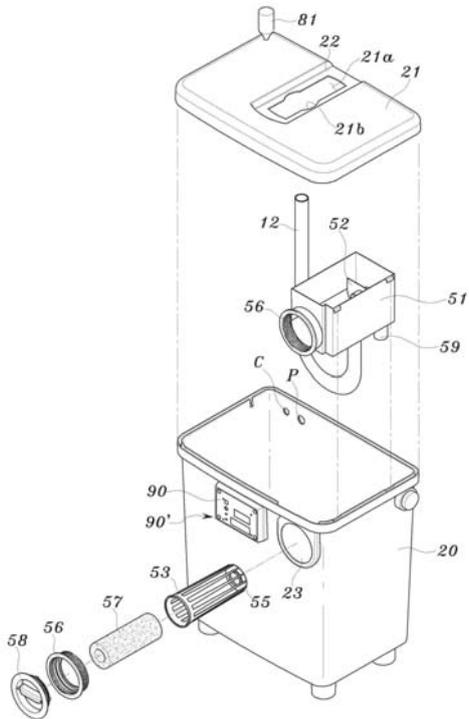
심판장	심판관	김주섭	
주 심	심판관	이은혁	
	심판관	정경덕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도면

[도 7] 본 발명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의 세면수 공급부를 나타낸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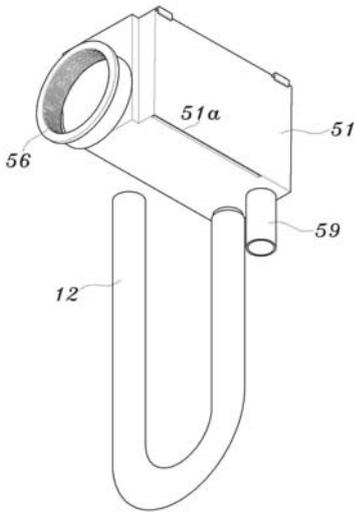


[도 8] 본 발명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에 따른 필터수단의 분해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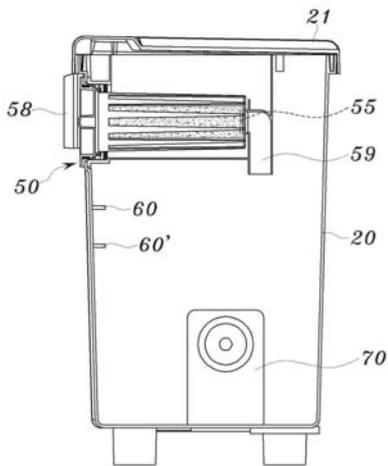


[도 9] 본 발명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에 따른 필터수단의 배관 상태를 나타낸

도면



[도 10] 본 발명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에 따른 저수조의 측단면도



[주요 도면 부호]

10 : 세면대, 12 : 배수관, 20 : 저수조, 21 : 뚜껑, 21a : 장공, 21b : 원형구멍, 22 : 수평흡, 23 : 필터삽입구, 30 : 물탱크, 40 : 양변기, 50 : 필터수단, 51 : 필터 하우징, 51a : 관통구멍, 52 : 칸막이, 53 : 필터 지지구, 54 : 연결구, 55 : 필터 삽입돌기, 56 : 필터 체결링, 57 : 원통상 필터, 58 : 필터 마개, 59 : 배수관, 60, 60' : 제 1, 2 수위 감지센서, 70 : 수중펌프, 80 : 세정액 투입수단, 81 : 세정액 저장통, 82 : 하향 관통관, 83 : 상부 솔레노이드밸브, 83' : 하부 솔레노이드밸브

[별지 2] 비교대상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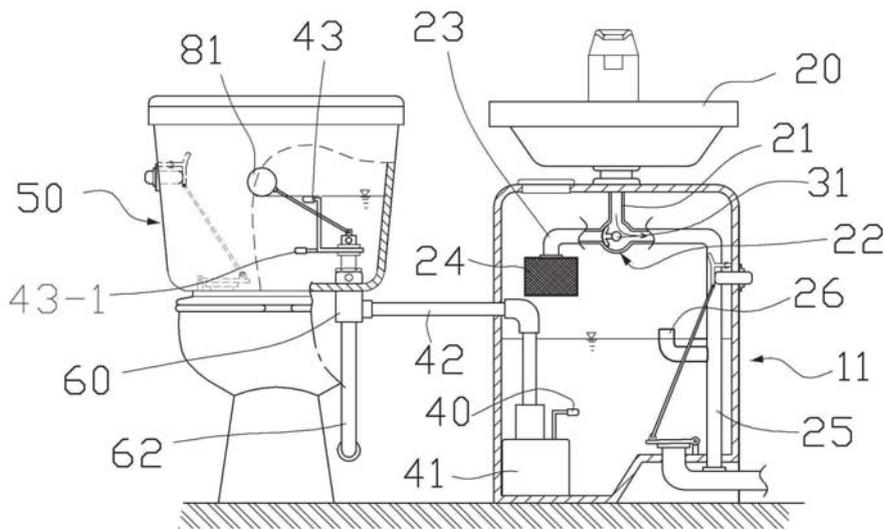
1. 비교대상발명 1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1은 양변기용 세면수 재활용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원 양변기용 세면수 재활용 장치(10)에 있어서, 세면대(20)에 결합되어 세면수를 저장하는 본체인 물탱크(11)를 설치하고, 상기 물탱크(11)에는 세면대(20)의 중앙에 설치된 배수관(21)에 입수부(22)를 형성하고, 상기 입수부(22)에는 전환밸브손잡이(30)에 연결된 전환밸브(31)를 설치하고, 상기 입수부(22)의 일측, 즉 도 2의 도면에서 볼 때 왼쪽방향에 형성한 입수관(23)의 끝단에는 부유(浮遊)물질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필터부(24)를 설치한다(식별번호 [0019] 참조).

나. 주요 도면

[도 2a] 본 고안의 일부 절개 단면도이며 분배기에 대한 본 고안이 작동되는 상태 단면도



[주요 도면 부호]

11 : 물탱크, 20 : 세면대, 21; 배수관, 22 : 입수부, 23 : 입수관, 24 : 필터부, 25 : 직접배수관, 26 : 오버플로우, 30 : 전환밸브손잡이, 31 : 전환밸브, 40 : 센서, 41 : 공급모터, 42 : 공급관, 43, 43-1 : 센서, 50 : 양변기용물탱크, 60 : 분배기, 61 : 상부몸체, 62 : 상수관, 63 : 관통구, 64 : 세척수토출공, 70 : 하부몸체, 71 : 세척수 토입공, 80 : 정수공급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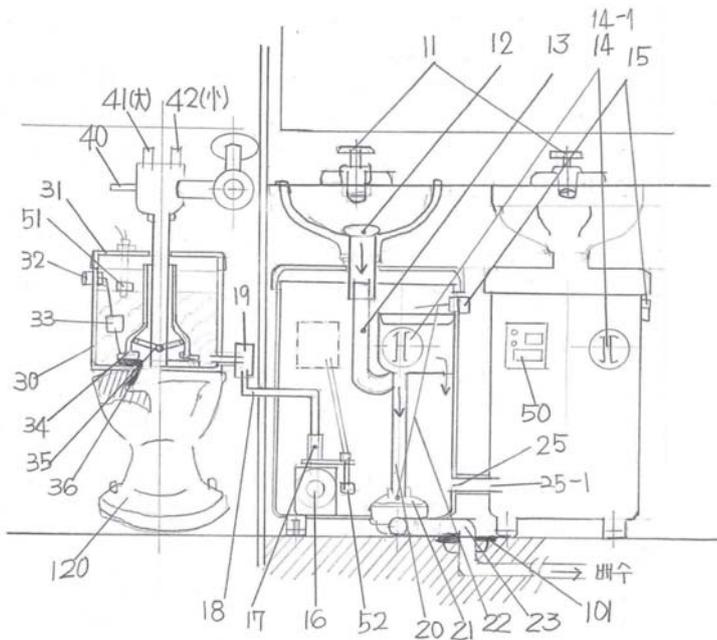
2. 비교대상발명 2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2는 세면수 재활용 변기 세척밸브 절수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고안의 세면수(水) 재활용 절수기인 물 저장탱크(10)와 변기 세척밸브절수장치(30)는 도2 내지 도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면대 배수구(12)와 물 저장탱크(10)의, 필터부(14), 필터 교체 덮개(14-1), 필터 상부의 소독장치부(60)와 저장된 용수를 세척밸브 저장탱크로 보내는 펌프부(16), 물 역류 방지 체크밸브(17), 재활용수를 보낼는 배관부(18), 변기 물 저장탱크부(30), 밸브개폐부(34), 작동부(35), 변기와 조립부(36), 세척밸브(40),大便(41), 소변(42)로 이루어진다(식별번호 [0016] 참조).

나. 주요 도면

[도 2] 본 고안의 물 저장탱크와 변기 세척밸브 절수장치 설치 연결구조 상태 단면도



[주요 도면 부호]

10 : 물 저장탱크, 14 : 필터부, 15 : 배출버튼, 16 : 펌프부, 17 : 역류체크밸브, 18 : 물연결통로, 19 : 물분배부, 30 : 변기밸브 저장탱크부, 34 : 밸브시트부, 35 : 변기밸브 작동부, 36 : 변기 연결부, 40 : 변기 세척밸브 작동부, 41, 42 : 소,대변부, 50 : 기관부, 51 : 수위센서, 58 : 전광판 모니터, 60 : 소독세정부, 65 : 저장탱크 높이조절부, 101 : 바닥배출부, 120 : 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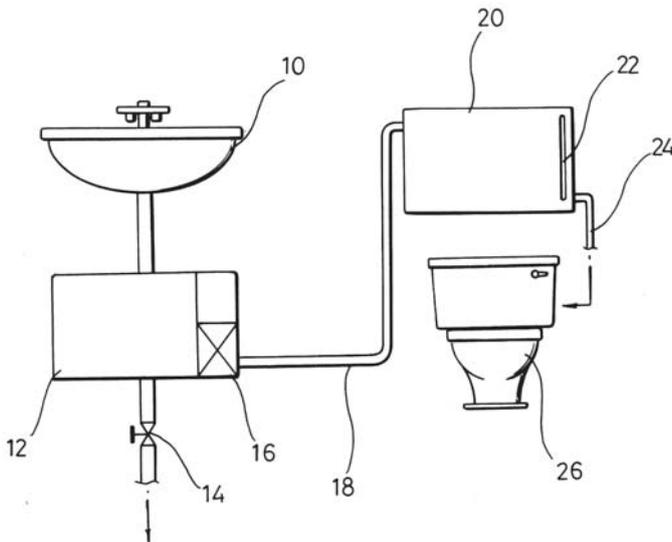
3. 비교대상발명 3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3은 절수형 세면기에 관한 것으로, 본 고안의 목적은 세면기에서 사용한 사용수 중에서 비교적 깨끗한 물을 간단한 방법에 의해 세정작업을 거쳐 깨끗한 물로 만든 후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변기의 세척수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물을 절수 할 수 있음은 물론 사용수를 이용하더라도 변기의 막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세면기에 있어서, 손이나 얼굴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면기 본체; 상기 세면기 본체에서 사용된 사용수의 오염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저장하거나 하수구를 통해 배수되도록 하기 위한 밸브와, 그 밸브의 조작에 의해 오염도가 낮은 사용수를 세정하도록 하기 위한 세정통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수세정부; 및 상기 세정부에서 세정된 사용수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와, 상기 세정통과 저장탱크 사이에 배치되고 상기 세정통의 사용수가 저장탱크로 이동되는 통로를 제공하는 제1 도관과, 상기 제1 도관을 통해 사용수가 이동되도록 하는 펌프로 이루어지는 사용수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절수형 세면기이다('요약' 참조).

나. 주요 도면

[도 1] 본 고안에 의한 절수형 세면기의 구성을 나타낸 개략도



[주요 도면 부호]

10 : 세면기 본체, 12 : 세정통, 14 : 밸브, 16 : 펌프, 18 : 제1 도관, 20 : 저장탱크, 22 : 제2 도관, 26 : 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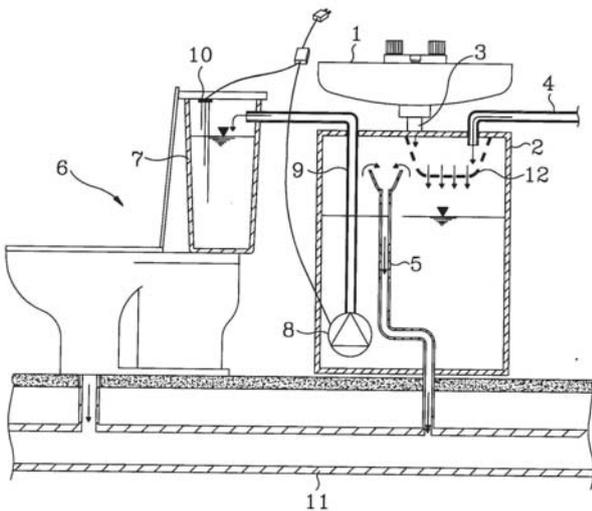
4. 비교대상발명 4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4는 허드렛물을 이용하는 수세식 변기의 세척수 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 세면기(1)의 하부에 허드렛물 집수조(2)가 세면기배수관(3)과 연결되도록 설치되고, 상기 집수조(2)의 상부에 세탁기 및 욕조 등의 배수관과 연결된 허드렛물 수집관(4)이 설치되며, 상기 집수조(2)의 내부 또는 일측에는 집수조(2)에서 허드렛물이 넘치지 않도록 과다하게 유입되는 물을 하수관(11)으로 월류시키는 월류관(5)이 설치되고, 상기 집수조(2)에는 수세식변기(6)의 세척수조(7)에 세척수를 공급하는 펌프(8)가 설치되며, 상기 펌프(8)와 세척수조(7) 사이에는 세척수공급관(9)이 설치되고, 상기 세척수조(7)에 설치된 수위조절기(10)에 연동하여 펌프(8)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되어, 세면기나 세탁기 및 욕조 등에서 한 번 이상 사용된 허드렛물을 집수조에 저장하여 자동으로 수세식변기의 세척수조에 공급할 수 있게 되므로써, 수도요금을 절약하고 용수부족 문제를 경감시키며, 하수발생량을 감소시켜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을 감소시킴과 더불어 호수와 하천등의 수질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요약' 참조).

나. 주요 도면

[도 1] 본 발명에 따른 수세식 변기의 세척수 공급장치 제1실시예의 설치도



[주요 도면 부호]

1 : 세면기, 2 : 허드렛물 집수조, 3 : 세면기 배수관, 4 : 허드렛물 수집관, 5 : 비상용 월류관, 6 : 수세식 변기, 8 : 펌프, 9 : 세척수 공급관, 10 : 수위조절기, 11 : 하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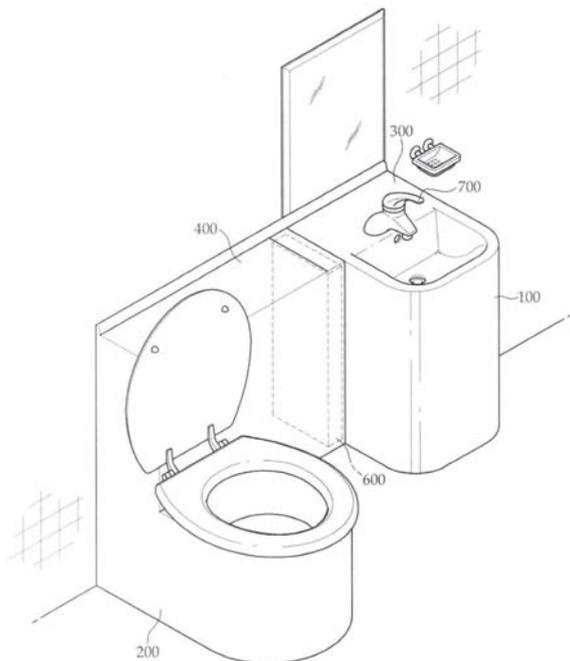
5. 비교대상발명 5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5는 수세식 변기에 활용되는 세면대 물 재활용 장치에 관한 것이고, 세면대에 물을 임시 저장하는 수조를 구비하고 각종 필터를 설치하여 세면대로부터 하수구로 버려지는 물을 재활용토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세식 변기에 활용되는 세면대 물 재활용 장치에 관한 것으로, 상부 전면에 용기 형태의 물저장부를 갖는 직육면체 형태의 세면대와, 상기 세면대의 하부에 위치하며, 세면대에서 발생하는 물을 1차 저장하는 임시저장수조와, 상기 임시저장수조의 후면에 배치되는 직육면체 형태의 용기로서 하부에 제 1 필터를 구비하여 임시저장수조에 존재하는 물을 1차 필터링하는 제 1 집수조와, 상기 제 1 집수조에 수평하게 연장 설치되는 직육면체 형태의 용기로서, 제 1 집수조의 출력면에 제 2 필터를 설치하여 2차 필터링하여 집수하고 이를 변기에 제공하는 제 2 집수조를 포함하여 구성함이 특징이다(‘요약’ 참조).

나. 주요 도면

[도 1] 본 고안의 전체 구성도



[주요 도면 부호]

100 : 세면대, 200 : 변기, 300 : 제1 집수조, 400 : 제2 집수조, 600 : 2차필터(활성탄),
700 : 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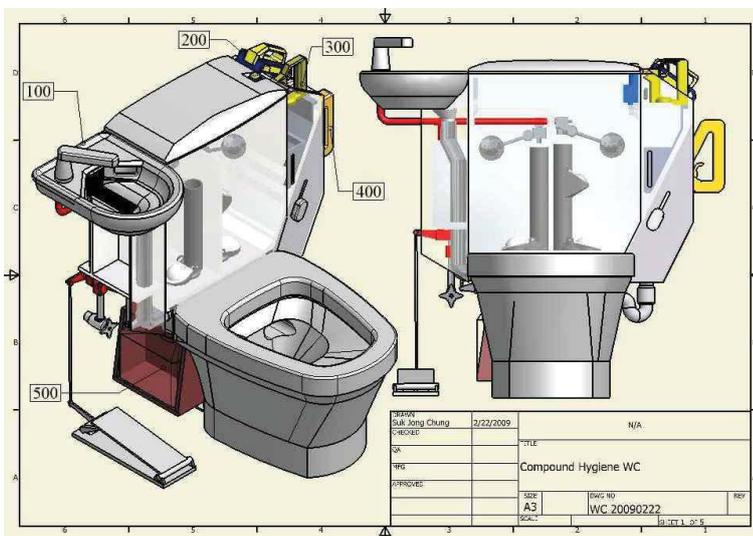
6. 비교대상발명 6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6은 복합 위생 변기에 관한 것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매번 드나들어도 내부에서 손을 씻고 칸막이 문 등을 열고 나온다면 오염이 줄고 물 자체도 세척수로 사용이 된 후 다시 재사용이 되어 낭비를 줄이게 된다. 전 사용자가 변기를 깨끗이 사용하지 않고 나온 경우에도 후 사용자가 저수조 옆에 비치된 청소도구를 이용해 스스로 청소를 손쉽게 하여 사용을 할 수 있어 사용자와 화장실 둘 모두의 위생과 청결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유용한 청소도구로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청소가 되어 관리에도 용이한 점으로 기존 시설보다 나은 관리가 된다. 혹시 변기와 세면기가 막히는 상황에도 넘침 방지로 집수 통과 상수 차단 기능이 있어 오물이 넘쳐 엉망이 되는 상황을 방지해 주며 변기 막힘을 관리자에게 알려 바로 대처하게 한다(식별번호 [0039] 내지 [0042] 참조).

나. 주요 도면

[도 1] 총 구조를 나타낸 전체 구조도



[주요 도면 부호]

100 : 세면기, 200 : 펄프 청소기, 300 : 분무기, 400 : 변기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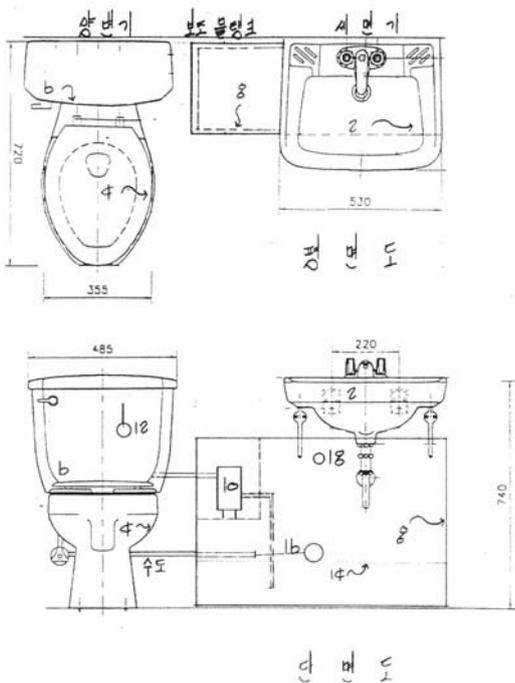
7. 비교대상발명 7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7은 절수식 양변기에 관한 것으로, 양변기 물탱크(6)의 물 사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세면기(2) 하부에 신설 보조 물탱크(8)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터(10), 수도 공급용 볼 밸브(16), 만수 시 물이 흐르는 오버 드레인(18)을 설치하여 기존의 세면기에서 쓰던 물을 버리지 않고 신설 보조 물탱크(8)로 흘러 보내어 저장시킨 후, 양변기 사용 시 전원 자동 센서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전원을 작동하여, 모터가 동되므로 신설 보조 물탱크에서 기존양변기 물탱크로 물이 공급되는 물 절약 방식이다(‘고안의 구성 및 작용’ 참조).

나. 주요 도면

[도 2] 본 고안에 따른 세면기 하부에 장착한 절수식 양변기의 사시도



[주요 도면 부호]

2 : 세면기, 4 : 양변기, 6 : 기존 양변기 물탱크, 8 : 신설 보조 물탱크, 10 : 모터, 12 : 물 수이조절 센서, 14 : 1회분 물수위, 16 : 수도 공급용 볼밸브, 18 : 오버 드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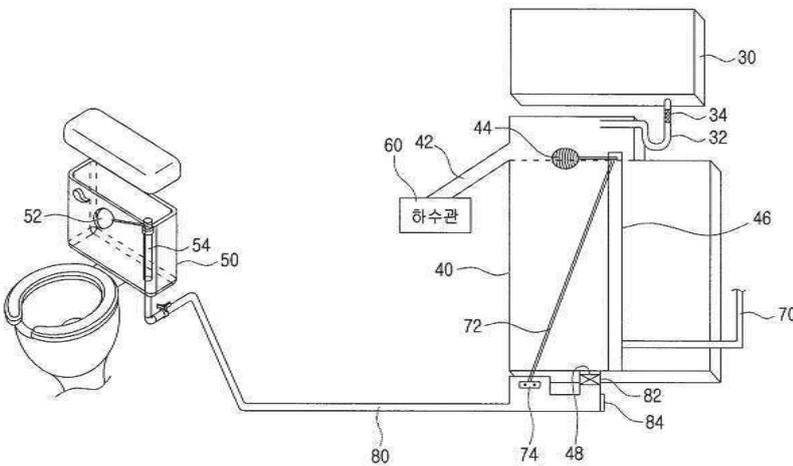
8. 비교대상발명 8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8은 오수 재활용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주방의 싱크대로부터 배출되는 생활 오수를 저장하는 오수저장탱크로서, 상부 일단에는 싱크대로부터 배출되는 오수중 고상 오물이 걸러지는 망을 포함하는 제1연결관이 설치되며, 상부의 타단에는 하수관과 연결되는 제2연결관이 설치되고, 내부에는 수면의 높이에 따라 물의 공급여부를 제어하는 부레식 밸브가 설치되며, 하부면에서는 배출구가 형성되어 있는 오수저장탱크;와 주방에 상수도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공급부로부터 상기 오수저장탱크에 연결되며, 상기 오수저장탱크 내의 부레식 밸브에 의하여 물의 공급이 제어되고, 별도의 연결관에 의하여 상기 오수저장탱크로부터 외부로 물이 배출되는 보조공급부와 수면의 높이에 따라 물의 공급여부를 제어하는 부레식 밸브를 포함하는 양변기; 및 상기 오수저장탱크 및 보조공급부로부터 상기 양변기로 연결되는 공급관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오수재활용시스템을 제공한다('요약' 참조).

나. 주요 도면

[도 2] 본 고안에 따른 오수 재활용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



[주요 도면 부호]

30 : 싱크대, 40 : 오수저장탱크, 42 : 연결관, 44 : 부레, 46 : 내부관, 48 : 배출관, 50 : 양변기, 52 : 부레, 54 : 물공급관, 60 : 하수관, 70 : 상수도공급부, 72 : 파이프라인, 74 : 유량제어수단, 80 : 공급관